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3. 11. 17.

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1. 17.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복지향상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규정 신설
(안 제5조제1항제4호)
- 나.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방법 규정 신설(안 제8조제5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19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
 - 성별영향평가: 검토의견 없음[복지지원과-37920(2023. 9. 27.)]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3-1498호
 - 가) 예고기간: 2023. 9. 27. ~ 2023. 10. 17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훈격려금”을 “보훈격려금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쓰레기 종량제봉투: 매월 60리터

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상·하반기 연 2회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, <u>보훈격려금</u>(이하 “보훈명예수당 등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8조(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5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훈격려금 등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쓰레기종량제봉투: 매월 60리터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상·하반기 연 2회 지급한다.</u></p>

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발생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함.
 - 제작비용: 2.376천 원 정도
 - 산출근거
 - 1인당 20리터 36매 × 1,000명
 - 봉투제작비 66원 × 36,000매

작성자: 주민생활과장 김 재 열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■ 국가보훈 기본법 [시행 2023. 6. 5.] [법률 제19228호, 2023. 3. 4., 타법개정]

제19조(예우 및 지원)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8. 4.]